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Ж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당첨자 발표일(2019.09.0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9.20.(금)	24.09.27.(금)	24.10.04.(금)	24.10.07.(월)~24.10.08.(화)	24.10.10.(목)~24.10.11.(금)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u> <u>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u>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 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지 유의사항

П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9.20.(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54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8.12.(월)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19000396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공고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09.20.(금)	24.09.27.(금)	24.10.04.(금)	24.10.07.(월)~24.10.08.(화)	24.10.10.(목)~24.10.11.(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현장접수 불가	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공고문 참조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시 동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19.09.05.)부터 1년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동작구 도시정비2과 11413호(2024. 9. 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39길 39
- 공급규모 : 아파츠 지하 3층, 지상15층 11개동 총 514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세대(일반공급 1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Ш

주택		주택형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일반공급
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세대수
2024930054	01	059.9270E	59E	59.9270	20.6698	80.5968	51.9528	132.5496	36.0276	1	1
2024930034				1	1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만 공급되며, 발코니 비확장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m² x 0.3025 또는 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을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 및 옵션금액 별도)

(단위: 원)

				분양금액			잔금 (90%)	비고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수	아파트분양가(A)	재공급 부대경비(C)	계약금 (10%)		입주일 또는 잔금납부만료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고 (옵션품목별도, 변경불가)	
059.9270E	59E	202-608	760,000,000	32,193,000	792,193,000	79,219,300	712,973,700	발코니확장, 중문, 시스템에어컨(거실, 침실1)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에 따라 시공이 완료되어 청약자는 발코니 기시공 된 플러스옵션비용 납부조건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관리비,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주택은 최초입주일부터 재공급일까지의 기간이 있으므로 주택내부에 사용감이 있는 점을 반드시 양지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 계좌는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세대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잔금도 해당세대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잔금90%로 나누어 납부하며, 잔금 90%는 실입주일 또는 키불출일 중 빠른 날짜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잔금납부 마감일인 2024.11.28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요건에 따릅니다.
-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 및 해당 세대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인지세법」제8조 개정(2022.12.31.)에 따라 과세문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등의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도니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1항3호 소정의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됩니다.
- 수입인지 구입 후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 니다.

■ 별도계약 품목 -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현 시설물 상태 계약 조건임

(단위: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수	품목	옵션금액	잔금 (100%) 입주일 또는 잔금납부만료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02-608	발코니 확장	10,910,000	10,910,000
050 02705	505		시스템에어컨	2,800,000	2,800,000
059.9270E	59E		중문	1,947,000	1,947,000
			합계	15,657,000	15,657,000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금지 됩니다.
- ※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VI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0.04.(금) ~ 2024.10.13(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10.0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① 무주택서약서	본인	· 조합사무실 비치
	0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0		③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④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④ 구민중국표중간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0		⑤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공통서류		0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0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세대주성명/관계,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번호(뒷자리포함) 등을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⑦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 계약 불가
	0		⑧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0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2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 (9) 출입국에 선언 자글증정 -	세대원	·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0	⑩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적격통보		0	① 무주택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받은자		0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 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대리인 신청시		0	①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 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용도: 아파트계약위임용 (본인 발급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 불가

추가제출 서류(본인외	0	② 위임장	-	조합사무실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모두 제3자)	0	③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기한(2024.10.07.(월)~2024.10.08.(화))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20.(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 일시: 2024.10.04.(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가능 	◆ 일시: 2024.10.10.(목)~2024.10.11.(금) (2일간) 10:00 ~ 16:00 ◆ 장소 : 조합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5길 37 202호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조합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일	2024.10.07.(월)~2024.10.08.(화) 10:00~16:00 (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5길 37 202호 조합사무실		
유의사항	※ 모든 증명 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함.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날로부터 7일)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확인 예정이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20. 2. 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ΙX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장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남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받양 원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중교회에 따른 부적경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중교회에 따른 부적하고 통보안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급이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에서 이상의 직계존속에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에서 이상의 직계존속에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것으로 또는 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말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증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가 제조로 및 제6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논용자로 공본보 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말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증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조로 및 제6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공원하여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수한 세대가 소형저가구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9함께 1분 전상하고 남은 주택을 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11. 임자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용이 임자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2. 주걱장을 지장되면이 용치곱리다 이하던 일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2. 주택공급신청자가 일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2.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 한 정한다는 주택 시청함에 제조조 각 및 및제3조제 1학자 2호 및 제3조제 1학자 신경을 말한다)이 호에서 같다는 주택공급신청자 2차 및 제3조제 1학자 신경을 말한다)이 함께 1분 보다 1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보다 전략을 기원하는 구역 보다 기관을 말한다)이 모든 주택공급신청자 일반 기관을 보다 기관을 되		

■ 감리 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소방/정보통신	전기	비고
회사명	(주)신화엔지니어링	(주)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주)케이제이엔지니어링	
감리금액	2,015,708,200	396,000,000	493,631,000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본 단지는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분양구분(조합원 · 일반 · 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CG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은 천정고, 입면디자인, 벽체 위치 및 기둥설치 유무 등을 포함한 내부 레이아웃 및 디자인은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별동으로 지상에 건립되는 획지1 보육시설 및 획지2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은 104동, 105동, 106동, 202동 및 인근 지하층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어린이집과 놀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102동 하부에 위치하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획지2 주민공동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에 의해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위 사항들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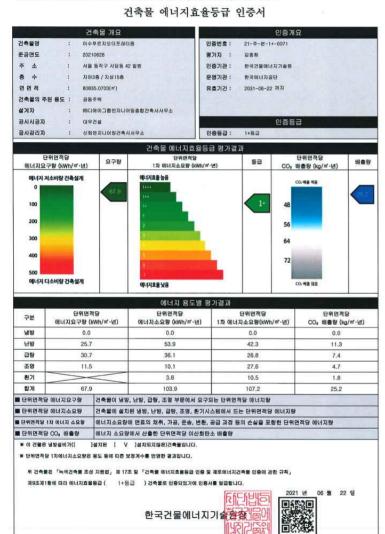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창호	적용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의무사항 이행여부 -	고효율기자재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현관에 1개소 설치 (전용면적 60m² 이하는 설치제외)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 높이
2.3m	2.3m	2.1m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녹색건축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4호 서식]<개정 2017.1.20>





X

단지 여건 등

- |■ 입주예정일(잔금납부일): 2024.12.11. (60일 이상) ※ 입주예정일(잔금납부일) 이후라도 분양대금 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
-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비상급수시설, 자전거보관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주민회의실 등), 작은도서관, 등
- 주 차 장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3층 ~ 지하 1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현장여건 확인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시행사	시공사
제출일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우건설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5길 37 202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법인등록번호	110171-0075380	110111-2137895

- |※ 분양문의 : 02-3476-7776 (평일 10:00~18: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30~13:30)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이외의 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이미 준공완료 된 아파트임.
- ┃※ 신청 전에 본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열람을 통해 관련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하자보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37조, 38조, 39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되며,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